

2022. 1. 27.(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2. 2. 4.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2013. 2. 22. }
규정 제1562호

전부개정 2014. 02. 17. 규정 제1623호
제2차 개정 2015. 05. 26. 규정 제1635호
제3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7호
제4차 개정 2016. 04. 29. 규정 제1755호
제5차 개정 2016. 08. 16. 규정 제1769호
제6차 개정 2018. 04. 17. 규정 제1848호
제7차 개정 2021. 08. 30. 규정 제2020호
제8차 개정 2022. 02. 04. 규정 제20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직제) ① 대학원에 부원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국가정책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전공소속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5.26)

제4조(대학원위원회) ①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국가정책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교과과정 편성, 교과목 설강 및 수강지침 결정 등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7조(입학전형) ①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입학은 학칙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무논문학위과정 이수 중 제적된 사람은 무논문과정으로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6.2.19.)

제8조(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등록기간은 4개 학기로 하며 무논문학위 취득신청자는 추가로 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③ 학칙 제 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등록(이하 “수료자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를 통산 2회로 제한하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수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감면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되,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 등록을 하는 첫학기 등록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 및 휴·복학 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수료자 등록의 경우 휴학하거나 2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이 연한에 복수학위를 위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전공주임교수 의견서

제4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교과목은 3학점(단 정책논문작성법은 1학점) 단위로 편성하며, 1학점은 매학기 15시간(평가시험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제출자는 연구윤리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11조(교과목 설강) ①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과목설강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에는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강할 수 있다.

③ 전공교과목은 각 전공별로 매학기 4개 교과목 이내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복수학위 운영을 위해 개설되는 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9.)

제12조(학점이수)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대학원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소

속 전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9.)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신청에 의해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성적을 성적표에서 삭제한다.

④ 무논문학위 취득신청자와 수료 후 등록자는 추가 등록 학기에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을 본인의 전공과목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무논문학위 신청 및 수료 후 등록은 취소된다. (신설 2016.2.19.)

제13조(복수학위의 수학 등) ① 복수학위의 취득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한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점이수 및 인정 등은 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14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

[제목개정 2016.8.16.]

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동일 내지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수학점의 인정은 제8조 제2항의 등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6.8.16.)

②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이수학점 인정 한도) 제12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제14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이 각각 인정된 경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제15조(성적평가와 제출)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료인정) ① 수료의 인정은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논문 연구교과목 제외)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 이

어야 한다. <개정, 2022.2.4>

② 무논문학위 이수자의 수료인정은 5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2.2.4>

③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방법

제1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두 번째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학위수여의 방법) 학위수여는 수료 혹은 수료예정자 중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방법 중 한 가지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복수학위 신청자의 학위수여는 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2. 무논문학위 요건 심사

제2절 전공시험

제19조(응시자격)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제20조(과목) 전공시험은 이수한 전공 교과목 중 3개 교과목으로 한다.

제21조(출제위원) 전공시험의 출제위원은 소속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2조(시기) 전공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3조(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

제24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25조(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를 소정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청서와 함께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논문 작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0조(논문의 작성)제4호에서 정하는 석사 학위논문 대체인정의 예에 따른다. 단, 외국어 능력기준 충족 자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8. 30)

제28조(논문심사의 진행) 논문의 심사는 구술고사, 최종심사로 진행한다.

제29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3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진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논문심사의 합격기준) ① 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고, 최종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2.19.)

②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표절검사확인서’ (신설 2016.2.19.)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제31조(학위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논문 1부와 그 복사본 5부를 소정의 석사학위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

제4절 무논문학위

제32조(무논문학위 신청 자격) 무논문학위는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4학기에 등록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33조(무논문학위 신청과 이수 및 운영) ① 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2분의 1선 이후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논문학위의 신청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

③ 무논문학위 이수자는 5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성적의 평점 평균이 3.3이상이어야 한다.

④ 기타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무논문학위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정책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4.5.26)

② 복수학위의 취득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국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석사학위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정책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4.5.26)

제6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위탁교육생

제35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하며, 수료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과정) ① 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과정의 학생은 대학기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연구실적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위탁교육생)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생은 제휴 협약서에 근거하여 교육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62호, 2013.2.2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23호, 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635호, 2014.5.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47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30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755호, 2016.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69호, 2016.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48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020호, 202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41호, 20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수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국가정책대학원 ○ ○ 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학 위)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수제 호

수 료 증 명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국가정책대학원 ○ ○ 과정(제 기)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 이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학 위)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

연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국가정책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증명함.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구과제명 :

년 월 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학 위)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 위) ○ ○ ○ (직인)